

대전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101486 판결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1,785,381원 및 그중 71,027,083원에 대하여 2021. 5. 18.부터 2022. 1. 28.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이 충청북도 보은군 C 답 2046㎡에 관하여 2020. 11. 1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표시 채권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피고 A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에 따라서 피고 A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 주식회사 B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금전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기에, 피고 항변의 당부를 살펴본다.

피고 주식회사 B의 항변은,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A이 채무초과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줄을 피고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미수대금채무가 늘어나서 근저당 설정 당시에 무려 1억 원이 넘게 되었다는 점, 10년 넘은 거래관계가 있었다가 2020. 11. 이후로는 피고가 A에게 물품 공급을 한 바가 거의 없어 보이는바 피고가 대금채권회수의 곤란을 예상하여 우선담보권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거래가 상호중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한 판단이다. 달리 피고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71,785,381원(= 제1약정 대위변제금 27,756,712원 + 미수위약금 78,990원 + 대지급잔액금 555,888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43,270,371원 +

미수위약금 123,420원) 및 그중 71,027,083원(= 제1약정 대위변제금 27,756,712원 + 제2약정 대위변제금 43,270,37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5. 18.부터 2022. 1. 28.(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이 충청북도 보은군 C 답 2046㎡에 관하여 2020. 11. 1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표시 채권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사 오현석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써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각 신용 보증약정상 채권자입니다.
- 나. 피고 A은 'D'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원고와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의뢰인입니다.
-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합니다)는 충청북도 보은군 C 답 20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피고 A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해행위 수익자입니다.

2.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 (1) 원고는 피고 A과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용보증약정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간	신용보증원금
제1신용보증약정	2010. 04. 09.	2011. 04. 08.	47,5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11. 03. 29.	2012. 03. 28.	45,000,000원
합	계	금	92,500,000원

(갑 제1, 2호증의 1 각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 참조)

- (2) 그리고,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

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한 그 이행한 날부터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신용보증서 발행

- (1)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E은행 대전지점(이하, E은행이라 합니다)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약정	보증	발급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번호	보증금액
제1약정	제1보증	2010. 4. 09.	2011. 4. 08.	기업운전 일반자금	F	47,5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2011. 3. 29.	2012. 3. 28.		G	45,000,000원
합		계		금		92,500,000원

(갑 제1, 2호증의 2 각 신용보증서 참조)

- (2) 그 후 피고 A은 위 제1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7,2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21. 3. 25.로, 위 제2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2,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21. 3. 25.로 각 조건변경을 하였습니다.

(갑 제1, 2호증의 3 각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참조)

다. 피고 A의 대출 실행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갑 제1, 2호증의 4 각 여신거래약정서 참조)

약정	보증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
제1약정	제1보증	2010. 04. 12.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0,000원
제2약정	제2보증	2011. 03. 30.		50,000,000원
합			계	100,000,000원

라. 원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

- (1) 피고 A은 2020. 10. 6. 소외 흥성세무서에 국세채납이 발생한 후 2021. 1. 12. 신용관리정보등록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E은행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액 상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정	보증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제1약정	제1보증	2021. 05. 18.	27,756,712원
제2약정	제2보증		43,270,371원
합	계	금	71,027,083원

(갑 제3호증 신용정보조회서, 갑 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참조)

- (2)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부대비용

- (1) 대지급금

원고는 제1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고 A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으로 581,13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송달료 환급액 25,248원을 상계하여 현재 대지급잔액금으로 555,888원이 남아 있습니다.

(갑 제5호증 대지급금지급회수내역 참조)

- (2) 미수위약금

원고는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미수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미수위약금으로 202,410원(제1약정

78,990원 + 제2약정 123,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갑 제6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참조)

바. 연체 이자율

소정의 연체 이자율은 각 대위변제일인 2021. 5. 18.부터 현재까지 연 8%입니다. (갑 제7호증 기간별손해금율변동표 참조)

3. 사해행위취소의 청구

가. 피보전권리요지

원고는 각 신용보증약정 및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피고 A이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A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및 그에 따른 대지급금, 미수위약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 (1) 피고 A은 각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의뢰인으로서, 지금까지 재산을 조사하여 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피고 B과 2020. 11.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0. 11. 2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 제8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2) 즉,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 당시에는 원고의 대위변제를 통한 구상금 채권이 완전하게 성립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각 신용보증약정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D'의 계속적인 영업악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홍성세무서에 대한 국세채납으로 신용관리정보등록되어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

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함으로서 채권자들을 해하여 채권 확보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소결

따라서, 충청북도 보은군 C 답 2046㎡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11. 19.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20. 11. 23. 접수 제11024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및 배당

가.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신청하여 2021. 3. 19. 경매 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나. 그 후 위 경매 사건은 소외인의 매각으로 경매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기하여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및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을 제외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2022. 4. 19. 9,099,506원이 배당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2022. 3. 7. 대전지방법원 2022카단50699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으로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되어 있습니다.

(갑 제9호증 결정(2022카단50699), 갑 제10호증 배당표(H) 참조)

5.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원상회복 방법

피고 B은 거래처관계에 있는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원고 및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받은 사해행위 수익자로서, 자신이 경

배를 실행하여 배당을 받았지만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지급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이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채권의 표시

충청북도 보은군 C 답 2046㎡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통하여
피고 B이 소외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9,099,506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끝.

